

강사료지급규정

제정 2012.03.01 1차 개정 2016.03.01
2차 개정 2018.03.05 3차 개정 2019.08.26
4차 개정 2021.08.09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우송정보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에 대한 강사료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 ① 실험, 실습 및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실습강의라 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일반 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.

③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
④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.

⑤ 전임 및 초빙교수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.

⑥ 2인 이상이 담당하는 팀티칭과목의 시간은 책임수업시간을 산정하여 시간수를 담당 과목 교원 및 강사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
제3조(책임시수) ① 교원의 책임시수는 교무규정 제2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하되,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였을 시는 적은 책임시수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16.3.1.>

② 삭제<2018.3.5.>

제4조(강사료 계산) ① 전임, 초빙교원 및 특임교수의 초과강사료는 [별표 2]에 의거 지급하고, 산업체 겸임교수의 강사료는 [별표 3]에 의거 지급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, 2019.08.26., 2021.08.09.>

② 시간강의의 지급 범위는 전월 3주차까지의 강의 진행에 의하며, 수업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같이 합산할 수 있다.

③ 우송대학교 소속 전임교수가 본 대학에 출강하는 경우, 책임시수는 우송대학교 수업시수와 합산하여 산정하되 소속대학에서 강사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책임시수를 적용받지 않는 수업은 출강하는 대학에서 지급한다. <개정 2021.08.09.>

④ 강사의 강사료는 [별표 4]에 의하며 등급의 책정 기준은 강사등급 산정을 위한 지침의 기준표에 따른다. 다만, 방학 기간중 강의계획서 작성, 입력 및 성적처리, 제출 등의 업무 담당에 따른 수업준비수당 지급대상기간은 학기 시작 전 1주일, 학기 종료 후 1주일에 한한다. <신설 2019.08.26.>, <개정 2021.08.09.>

제5조(강사료 지급의 특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교원에게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1. 시험시간

2.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로 휴교 하였을 때

제6조(지급일) ① 전임교원의 초과시수에 대한 초과강사료는 급여일과 같다. 단, 수업일수가 3주 이하일 때에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지급될 수 있다.

②시간강의에 의한 강사료 지급은 매월 3일에 지급하되,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될 수 있다.

③특별강의에 의한 강사료는 강의실시 후 별도 지급한다.

제7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규정은 2018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삭제 2016.3.1.>

[별표 2] 초과강사료 지급기준(시간당 평균 단가, 단위 : 원)<개정 2018.03.05., 2019.08.26., 2021.08.09.>

구 분	주간	야간	비 고
전임교원, 초빙교원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원	12,000	13,000	책임시수 초과분
우송대학교 전임교원	대학 간 협약에 의함		원 소속대학에서 지급

[별표 3] 산업체 겸임교원 강사료 지급기준(시간당 평균단가, 단위 : 원)
<개정 2018.03.05>

시간당 강사료	35,000원
---------	---------

[별표 4] 강사의 강사료 지급 기준(시간당 평균단가, 단위 : 원) <신설 2019.08.26.>, <개정 2021.08.09.>

구 분		강사료 (학기중)	수업준비수당 (방학중)	비 고
강 사	특	50,000	50,000	
	A	35,000	35,000	
	B	30,000	30,000	
	C	25,000	25,000	

※ 강사의 강사료 지급 등급(단가)는 매 학기 산정하도록 하며, 산정기준일은 학기 개시일로 함